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옥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558

발의연월일: 2024. 7. 10.

발 의 자 : 송옥주 · 박균택 · 박 정

김성환 • 이수진 • 김재원

노종면 • 한정애 • 추미애

홍기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대한민국헌법」 제33조는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되,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에 대해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장을 준용하여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집단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연구소 직원의 노동권에 대한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국방과학연구소의 직원에게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, 단체 교섭권을 인정하여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자 함(안 제14조 및 제22 조).

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 제목 중 "지위"를 "지위 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본문 중 "규정 및 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"을 "규 정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.
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소의 직원에 대하여는 「국가공무원법」 제65조 및 제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③ 연구소의 직원은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에도 불구하고 파업,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22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1.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파업,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 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
 - 2. 제15조에 따른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사람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14조(임직원의 <u>지위 등</u>) <u>①</u> --제14조(임직원의 지위) 연구소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「국가공무 원법」 제7장 복무에 관한 규 정 및 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・운영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하며, 「형법」이나 그 밖 의 처벌 법규를 적용할 때 및 「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안장에 관 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국가 공무원으로 본다. 다만, 「국가 공무원법 | 제64조에도 불구하 고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사 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직 무에 대하여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하게 할 수 있다. <신 설>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소 의 직원에 대하여는 「국가공 무원법」 제65조 및 제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③ 연구소의 직원은 「노동조 <신 설> 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에도 불구하고 파업, 태업 또는 그 엄수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.

제22조(벌칙) 제15조에 따른 비밀 제22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 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- 1.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파 업,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 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
- <u>2. 제15조에 따른 비밀 엄수</u>의 무를 위반한 사람